



제 2018-142호

중국

중국 음악저작권집중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북경사무소

■ 현황

-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음악인들이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유일한 신탁관리단체인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집중관리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임
- 또한 이러한 음악집중관리의 문제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되고 있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영화배우 겸 가수인 자오웨이(赵薇)의 음반 '아문도시대도연(我们都是大导演)'에 포함된 강성자(江城子)라는 노래 한국의 작사 저작권 문제로 푸자오 뮤직(浮躁音乐)과 NOVA 뮤직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을 진행함. 진척이 없자 푸자오 뮤직은 바로 음저협에 '음반법정허가 저작권 사용료 대리 징수 증명서(录音法定许可著作权使用费收转证明)'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은 이후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매할 음반을 광고함과 동시에 예약판매를 개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됨



- 푸자오 뮤직은 이번 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강성자를 포함한 9곡의 가사가 이미 중국 음저협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음저협은 해당 가사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수권할 수 있으며, 비용을 대리 수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NOVA 뮤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힘
- 하지만 NOVA 뮤직은 푸자오 뮤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설사 음저협이 대리 징수 증명을 발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저작권 이용 허락과는 구별되며, 더욱이 증명서 상에는 ‘이용허락’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함
- 또한 NOVA 뮤직의 책임자는 “음저협의 회원인지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저작권 이용료를 집중관리조직에 지불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정허락)제도 아래에서는 이용자가 음저협에 제공한 자료가 법정허락에 부합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음저협 책임자는 NOVA 뮤직에게 밝히기를 “음저협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허락에 따른 사용료 대리 수취이며, 만약 이용자가 비회원인 저작권자 본인에게 이미 연락을 한 경우라면 음저협은 이러한 비용을 대신 수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푸자오 뮤직과 NOVA 뮤직간의 협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화중과학기술대학 송치(熊琦)교수는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의 설립목적은 저작권자가 대량의 허락을 할 수 없고, 또한 이용자가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도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최근 음저협은 중국 음악업계와 음악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음악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힘



- 특히 “저작권료 수취와 관련하여, (법정허락의 경우) 음저협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수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음악인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이러한 중국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중국에서 음저협에 가입하지 않은 음악인들이 다수임. 음저협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음악인들은 본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사와 저작권 대리업체를 통해서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음저협이 중국 음악인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

■ 평가

- 중국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은 음반제품의 법정허락과 관련된 조항인데 “음반제작자는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제작한 음반제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사용을 불허한다는 성명을 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중국 유일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와 같은 ‘법정허락’의 경우 2달 이내에 지불받은 보수를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함
- 중국에서 지난 1993년 처음으로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저작권법 3차 개정이 진행 중인 지금 중국 정부는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많은 음악인들의 반대로 지금은 거의 무산된 상황임.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음저협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이 다수이고 음악인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 중국에는 우리보다 적은 5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고 있음. 물론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한국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와 대리협의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우리 국민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중국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출처

- 민주법제망(民主法制網)
 - <http://www.mzyfz.com/cms/fayuanpingtai/xinwenzhongxin/fayuanxinwen/html/1071/2018-08-28/content-1357559.html>